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 19644 - XXXX

식품안전 국가표준 분유 (의견수렴고)

XXXX-XX-XX 발표

XXXX-XX-XX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위생건강위원회

국가 시장 감독 관리총국

발표

서 문

본 표준은 GB 19644-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분유>를 대체한다.

본 표준은 GB 19644-2010과 비교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다.

- 규범성 인용문건 삭제
- ‘용어와 정의’ 수정
- ‘관능 지표’ 수정
- ‘이화학적 지표’ 수정
- ‘미생물 지표’ 수정
- 야크 분유, 낙타 분유, 당나귀 분유 및 말 분유 등의 기술 요구 추가

식품안전 국가표준

분유

1 범위

본 표준은 분유(전지, 탈지, 부분 탈지분유)와 조제분유에 적용된다.

2 용어와 정의

2.1 분유

단일품종의 생유(生乳)를 원료로 하며 가공 제조된 분말 형태의 제품.

2.2 조제분유 formulated milk powder

단일품종의 생유(生乳) 및(혹은) 그 가공품을 주요 원료로 하며 기타 원료, 식품첨가제 및 영양강화제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가공 제조한 유고형분 함량이 70%보다 적지 않은 분말 형태의 제품.

3 기술 요구

3.1 원료 요구

3.1.1 생유(生乳): GB 19301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1.2 기타 원료: 관련된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2 관능 지표: <표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1> 관능 요구

항목	요구		검사방법
	분유	조제분유	
색과 광택	균일한 유백색 또는 유황색을 띤다.	상응하는 색을 가지고 있다.	적당량의 샘플을 건조

맛, 냄새	순수한 우유 향과 맛을 지닌다.	상응하는 맛과 냄새를 지닌다.	하고 깨끗한 흰색 접시(자기접시 또는 유사 용기)에 넣고 자연광에서 색채와 조직 상태를 관찰한다. 냄새를 맡고,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군 후 맛을 본다.
조직상태	건조하고 균일한 분말상태이다.		

3.3 이화학적 지표: <표2>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2> 이화학적 지표

항목		지 표	검사방법	
단백질(g/100g)	≥	소 분유	무지유고형분 ^a 의 34%	GB 5009.5
		조제 소 분유	16.5	
		양 분유	무지유고형분 ^a 의 34%	
		조제 양 분유	16.5	
		야크 분유	무지유고형분 ^a 의 39%	
		조제 야크 분유	18.6	
		낙타 분유	무지유고형분 ^a 의 36%	
		조제 낙타 분유	16.8	
		당나귀 분유	무지유고형분 ^a 의 18%	
		조제 당나귀 분유	11.0	
		말 분유	무지유고형분 ^a 의 18%	
		조제 말 분유	11.5	
지방 ^b (g/100g)	≥	소 분유	26.0	GB 5009.6
		양 분유	26.0	
		야크 분유	33.0	
		낙타 분유	28.0	
		당나귀 분유	8.0	
		말 분유	10.0	
환원유 산도(° T)		소 분유	≤18	GB 5009.239
		양 분유	7~14	
		야크 분유	12.5~18	
		낙타 분유	≤24	
		당나귀 분유	≤6	
		말 분유	≤10	
불순물 정도/(mg/kg) ≤		16	GB 5413.30	
수분(g/100g) ≤		5.0	GB 5009.3	

^a는 무지유고형분(%)=100%-지방(%)-수분(%)

^b는 저지방분유에만 적용.

3.4 오염물질 제한량 및 진균독소 제한량

3.4.1 오염물질 제한량은 GB 276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4.2 진균독소 제한량은 GB 276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5 미생물 제한량

3.5.1 미생물 제한량은 GB 2992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5.2 동시에 미생물 제한량은 <표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3> 미생물 제한량

항목	샘플 채취 방안 ^a 과 제한량				검사방법
	n	c	m	M	
균락총수 ^b /(CFU/g)	5	2	5.0x10 ⁴	2.0x10 ⁵	GB 4789.2
대장균군/(CFU/g)	5	1	10	10 ²	GB 4789.3
^a 샘플의 분석과 처리는 GB 4789.1과 GB 4789.18에 따라 이행한다.					
^b 활성 균중(호기성 및 통성 혐기성 활생균)을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6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

3.6.1 식품첨가제의 사용은 GB 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6.2 식품 영양강화제의 사용은 GB 1488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기타

4.1 제품에는 “분유” 또는 “조제분유”를 표시해야 한다.

4.2 소 분유는 “분유” 또는 “조제분유”로 표시해도 된다. 다른 분유는 분유의 품종도 표시해야 한다. (예 : “양 분유” 또는 “조제 양 분유”)